

#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00,282,563	24,008,477
일반회계	722,863,930	21,685,918
특별회계	77,418,633	2,322,559
공기업특별회계	65,831,687	1,974,951
상수도공기업	35,735,031	1,072,051
하수도공기업	30,096,656	902,900
기타특별회계	11,586,946	347,608
의료급여기금운영	744,198	22,326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689,702	20,691
농공지구조성사업	6,203,757	186,11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4,182	29,825
수질개선	594,325	17,830
주택사업	1,971,943	59,158
기반시설	16,695	501
장기미집행	372,144	11,16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994,852 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8,0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2023 회계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간주예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군비부담금은 다음년도 추경에 반영하며, 간주예산으로 처리된 사업 중 이월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포함한다.